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77

발의연월일: 2024. 8. 9.

발 의 자: 송석준 · 김선교 · 박준태

이종배 • 김예지 • 김미애

김성원 • 박정하 • 이헌승

고동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 등에 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피해금액을 보상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보장사업의 범위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생명·신체 손해에 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등재산상 손해에 대하여서는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에 의한 정부보장사업의 보장범위를 생명·신체 손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까지 보상하되, 경찰에 피해가 신고된 경우에 한정하여 가해자를 통한 사고사실확인과 보상금 회수가 가능한 무보험사고는 전범위에 걸쳐, 가해자를 몰라 사고사실 확인이 어려워 허위청구 가능성이 있는 뺑소니·낙하물

사고는 대인손해를 동반한 건만 대물보상을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 1항 등).

법률 제 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에 단서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정부는 피해자의 청구 또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책임보험등의 보험금등 한도에서, 제4호 및 제5호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사건 중에 제5조제2항의 보험 또는 공제의 보험금등의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청구는 자동차의운행으로 피해자가 사망 또는 부상당하거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사건이 경찰서에 신고된 경우에 한한다.

- 4.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자동차의 운행 중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 5.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또는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고, 피해자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제1항제5호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도록 할 수 있다.

제37조제1항 중 "제5조제4항에"를 "제5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 및 제5조제4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5조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분담금은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하는"을 "제5조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와 제5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하는 자의 분담금은 책임보험등과 제5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보상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 항 및 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험가입자등이 아닌자의 자동차 운행 중 또는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부터 적용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 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 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다만,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경 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 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 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 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① 정부는 피해자의 청구 또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제1 호부터 제3호까지는 책임보험 등의 보험금등 한도에서, 제4호 및 제5호는 다른 사람의 재물 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사건 중 에 제5조제2항의 보험 또는 공 제의 보험금등의 한도에서 그 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 다. 다만, 피해자의 청구는 자 동차의 운행으로 피해자가 사 망 또는 부상당하거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사건이 경 찰서에 신고된 경우에 한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 4.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자동차의 운행 중 다른 사람 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 5. 자동차보<u>유자를 알 수 없는</u> 자동차의 운행 또는 운행 중

② ~ ④ (생 략)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부의 보상 또는 지원의 대상·기준·금액·방법 및 절 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⑥ (생략)

제37조(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와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 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동차보유자는 자동차사고 피해 지원사업 및 관련 사업을 위한 분담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② (생략)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
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
을 당하고, 피해자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u>다만,</u> 제1항제5호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일정한 금액을 납입
하도록 할 수 있다.
⑥ (현행과 같음)
제37조(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보
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
<u></u> 는 자 및 제5조제4항에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내 야 할 자 중 제5조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분담금은 책임보험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회사등이 해당 납부 의무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징수하여 정부에 내야 한다.

③ -----제5조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와 제5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분담금은 책임보험등과 제5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는-----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